

평창군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1999. 12 . 18 평창군수(환경복지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1999. 12. 20
- 다. 상정일자 : 제73회 평창군의회(정기회) 제1차조례특위('99.12.21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환경복지과장 김용수)

가. 제 안 이 유

- '99. 8. 9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은 물론 법률의 미근거 및 중복규정을 삭제하여 행정규제 완화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 요 내 용

-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일부조항 삭제(안제7조내지제9조)
-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(안제1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허해성)

- 먼저 집행부에서 제안이유를 들은 '99.8.9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일자는 '99. 8. 6(대통령령 제16,508호)로 일자를 정정하며

- 본조례는 행정규제 완화와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사항으로서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과 중복이 되는 분뇨관련 영업허가 조항 및 청문조항, 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, 처리실적 보고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

생활오염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동법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세부적으로 정하는 시행령이 '99.8.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부과기준을 법에 부합되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 부과기준을

살펴보면 세부적이고 부과금액이 상당히 인상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.

-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고 법개정에 따른 부합조정 사항으로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오수·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.